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08호, '13.8월)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시설이나 판매공간 등(제15조 신설)

- 1) 공공기관이 공항, 항만, 철도, 휴게소, 전시시설, 청사, 여객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경우
- 2)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내에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유희공간이 있어 3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전화 : 042-481-8950, Fax : 042-472-7932)